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6. 21(월)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6. 4.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6. 4

라. 상정일자 : 2010. 6. 16(제184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과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기준을 준용하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혜택 마련

나. 주요내용

-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을 규정함(안 제12조제3호)
-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항)
- 사용료 등의 감면 중 여성문화회관과 서부여성회관 수영장의 감면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규정함(안 제19조)
-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
- 여성창업지원실 사용료를 규정하고, 복잡한 수강료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 (안 별표2부터 별표5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근거를 마련하고
- 서부여성회관 등 일부 기관의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0년 6월 4일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여성관련 시설 현황 ○

시설명	운영주체	주요 사업	부대시설	비고
여성복지관	시장	여성 능력개발 교육 · 취업지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여성과 아동의 상담 · 보호 등	유아실	리모델링 예정
여성의광장	시장	능력개발 교육 · 취업지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체력단련실	

시설명	운영주체	주요 사업	부대시설	비고
여성문화회관	인천 YWCA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활동 및 교육·취업 지원사업, 체육시설 운영	수영장 유아실	여성창업지원센터 신설
서부여성회관	시장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창업지원, 여성과 아동의 상담, 생활체육시설 운영	수영장·체력단련실	2010.4월 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3개소)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취업·창업사업		인천센터 남구센터 서구센터

□ 주요 검토 내용

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및 제12조(사업)

○ 제4조와 제12조에서는

- 여성문화회관의 기능 및 사업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여성 창업자 및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여성사회교육 기관 등에서 지역 특화 및 여성친화적 창업직종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 일정한 공간을 실비수준의 가격에 임대함으로써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반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사업자는 손쉽게 창업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입주 업종) 선정 시 면밀한 분석과 심의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유망한 사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창업지원센터 현황

구 분	입주기간		보증금/ 월 사용료		입주 업종	비고
	창업지원실	부스	창업지원실	부스		
여성복지관	1년	6월	100만/5만 (7.5평):4실	50만/2만 (3평):2실	홈패션,주얼리,벽시계, 인테리어,한복,양장	6실
여성의광장	1년	-	30만/7만 (7.5평)	-	홈페이지제작, POP,천연비누,그래픽 디자인, 디자인개발	5실
여성문화회관 (예정)	1년	-	50/5만 (1.5평)	-	한복, 반찬 등 예정	2실

- 보증금, 입주기간 등은 각 기관별 운영규정으로 결정(공간의 형태, 면적, 유동인구 등 종합적 감안)하고 보증금은 퇴소 시 반환
- 월 사용료는 전기세, 각종 공과금 등 필수경비를 포함(부가가치세 별도)
- 각 기관 별 심의위원회 구성, 입주업체 선정

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 안 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서는 제4항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기본 수영강습 외에 별도 프로그램 등 운영 또는 2가지 이상의 강습을 패키지로 운영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자율성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다만, 별도의 사용료를 정할 때는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 안 제19조는 각 시설의 각종 사용료(교육수강료, 유아수탁료, 생활체육 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서부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등의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생활체육 시설 사용료에 대한 50% 감면 규정 신설이 주요 내용임.

- 본 규정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사용료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다만,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됨에 따라 대상자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감면대상에 추가되어야 할 것임.

○ **각 개별 법령 규정사항**

법령명	대상	관련 규정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등	· 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시행령 제86조() - 별표 10	국공립공공체육 시설 100분의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 배우자, 유족, 부모 등	· 법 제59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시행령 제52조() - 별표 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법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준용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	· 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시행령 제17조(감면 대상시설의 종류 등) - 별표 2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100분의 50 감면

○ 주요 개정 내역(요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실시 행사 : <u>전액 감면</u> - 시비보조금 행사 : <u>50% 감면</u> ○ 교육수강료 및 유아수탁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기타 : <u>전액 감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사용료, 교육 수강료 및 유아수탁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가 주최하는 행사, 수급자, 한부모가족, , 사회복지시설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기타 : <u>전액 감면</u> 	독립유공자 등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 사용료 : 감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대상 <u>50% 감면</u> 	체육시설 감면 추가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 안 제20조는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2010.1.29 시행)에 의거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역(요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일 7일전 취소 : 전액 반환 - 시설사용 전까지 취소 : 50% 공제한 금액 반환 ○ 교육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강식 전일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개강식일 이후 수강 취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수강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한 상황, 시설 사용일 7일전 취소 등 : 전액 반환 - 시설사용 전까지 취소 : 50% - 교습개시 전일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교습개시일 이후 수강 취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 이용개시일 이전 취소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한 금액 반환 -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한 금액 반환	체육 시설 감면 추가

※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이용현황

- 일일 이용 인원 : 월 평균 630명(1일 25명 내외)
- 월 이용 회원 : 월 평균 240명
- 월 강습 회원 : 월 평균 600명
- 월 회원 반환율 : 약 3% 내외 (820명 × 3% = 25명 내외)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2010.1.29 시행)

- 품종 : 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
- 피해유형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별 표

○ 별표에서는

- [별표 2]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
 - 5. 여성창업지원센터에 부가가치세 별도 규정 보완
- [별표 3] 여성의 광장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
 - 6. 여성창업지원실 규정 추가 (기존 누락)
 - 7. 교육수강료 간결하게 규정

- **[별표 4]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
 - 8. 개인사물함 이용료 규정 추가 (체육시설 부대)
 - 9. 여성창업지원실 규정 추가(신설)
- **[별표 5] 서부여성회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
 - 5. 체육프로그램 수강료 → 5. 헬스시설 이용료 변경
 - 7. 개인사물함 이용료 규정 추가 (체육시설 부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용근, 이명숙, 오홍철, 이병화, 정종섭 위원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액 보전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요망
 - 서부여성회관 상담팀을 체육시설팀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 회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력,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 창업지원센터 사업 선정 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창업자들이 일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사후 관리 요망
 - 서부여성회관 등 공공기관의 각종 프로그램(부동산 강좌나 수영장 등) 운영 시 사설 학원과의 관계 등 지역사회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특히 교육의 내용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요망
 - 각종 감면 규정을 정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시설의 수익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답 변 >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사용료 감면에 따른 예산 부족액은 별도로 지원할 예정임.
- 서부여성회관 상담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과 시설 운영 초기 단계에 따른 상담수요 부족, 수영장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 등 복합적 사유로 인해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체육시설팀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추후 개선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김용근, 이명숙, 오홍철, 이병화, 정종섭 위원

6. 수정안 요지

- 안 제19조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p> <p>① 시장은 제1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여성문화회관과 서부여성회관 수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p> <p>2.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강료와 유아수탁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p> <p>2.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p> <p>3.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p> <p>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p> <p>시장은 제 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p> <p>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p> <p>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p> <p>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p> <p>5. (개정안과 같음)</p> <p>6. (개정안과 같음)</p> <p>7. (개정안과 같음)</p>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교육·취업 지원사업”을 “교육·취업·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정보제공”을 “정보제공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정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50 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4. 교습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5. 교습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6.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7.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1. 시설사용료 가. 대강당 나. 회의실세미나실	1회(1시간)		30,000	- 매시간 초과시 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1회(1시간)		15,000	
2. 냉·난방 가. 대강당 나. 회의실세미나실	1회(1시간)		20,000	- 매시간 초과시 마다 기준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1개월		15,000	
4. 교육수강료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이상3시간 이하)		12,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 이상7시간 이하)		15,000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		20,000	
5. 여성창업 지원센터	창업지원실	1개월	50,000	- 부가가치세 별도 - 보증금 100만원 별도 - 전기료 등 별도
	창업부스	1개월	20,000	- 부가가치세 별도 - 보증금 50만원 별도 - 전기료 등 별도
3. 유아수탁료 (교육생)	1개월		15,000	

[별표 3]

여성의광장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요금	비고
1. 공연장	주간 (1시간)	40,000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2:00 가. 토요일, 일, 공휴일은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기준사용료로 한다 나. 냉·난방기 또는 원형무대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각각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야간 (1시간)	50,000	라. 기준단위 시간은 1시간이며, 최초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함 마. 30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바. 30분~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2. 세미나실 (대)	1회 (4시간)	30,000	가.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행사를 뜻함 · 오전(09:00~13: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2:00) 나. 냉·난방기 사용 시는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다. 1시간이상 초과 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 라. 30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마. 30분~1시간 미만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바. 최초 1회(4시간)미만 사용은 1회 사용으로 한다.
3. 피아노	1시간	5,000	가. 기준단위 시간은 1시간이며, 최초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30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다. 30분~1시간 미만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종합조명	1시간	20,000	가. 기준단위 시간은 1시간이며, 최초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함 나. 30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다. 30분~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5. 헬스시설 이용료	1개월	20,000	
6. 여성창업 지원실	1개월	70,000	가. 부가가치세 별도 나. 보증금 30만원 별도
7. 교육수강료	1개월	20,000	교재비·재료비 등은 별도 수강생 부담

[별표 4]

여성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시설 사용료	대 강 당	1회(1시간)	40,000(주) 50,000(야)	가. 토·일·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퍼센트 가산 나. 매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기준요금의 20퍼센트 초과요금만 추가징수	
	회 의 실	1회(2시간)	30,000		
	전 시 실	1회(1일)	3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그랜드피아노	1회	3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기준요금의 20퍼센트 초과요금만 추가징수	
	빔프로젝트	1회	15,000		
	종합조명	1시간	20,000		
	무대시설사용료	1회	20,000		
	마이크사용료	기본3개	10,000 (추가개당 5,000)		- 건전지 별도준비
	음향반사판	1회	30,000		
	녹 음	카세트 DAT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10,000 30,000		
3. 냉난방 사용료		1시간	25,000	- 해당기준요금의 20퍼센트의 초과요금만 추가징수	
4. 수영장	일일회원	-	3,000	가.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나.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다.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학하여 주3일 운영하는 1개월 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단체회원		2,600		
	월회원	1개월	38,000		
	강습회원	1개월	48,000		
5. 체력단련프로그램 수강료 (요가, 댄스프로그램)		주2회/3개월	60,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주3회/3개월	70,000		
6. 유아 수탁료	교육생	1개월	15,000		
7. 교육 수강료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이상 3시간 이하)		12,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이상 7시간 이하)		15,000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		20,000		
8. 개인사물함		1개월	4,000		
9. 여성창업지원실		1개월	50,000	- 부가가치세 별도 - 보증금 50만원 별도	

[별표 5]

서부여성회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시설 사용료	강당	1회(1시간)	20,000(오전) 30,000(오후) 40,000(야간)	가. 토·일·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퍼센트 가산 나. 매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기준 요금의 20퍼센트 초과요금만 추가징수
	세미나실	1회(4시간)	30,000	
	야외공연장	1회(4시간)	20,000(주간) 30,000(야간)	
2. 부속설비 사용료	피아노	1회	30,000	
	빔프로젝트	1회	15,000	
	종합조명	1시간	20,000	- 매 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기준 요금의 20퍼센트 초과요금만 추가징수
	마이크	기본3개	10,000 (추가 개당 5,000)	
	녹음	1회	10,000	
3. 냉난방 사용료		1시간	2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기준 요금의 20퍼센트의 초과 요금만 추가징수
4. 수영장	일일입장	성인	3,000	가.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나. 월회원이거나 함은 1개월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단체입장	성인	2,600	다. 강습회원이거나 함은 입회하여 주3일 운영하는 1개월 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	1,600	
		어린이	1,3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월회원	성인	42,000	
		청소년	32,000	
		어린이	27,000	
	강습회원	성인	50,000	
		청소년	40,000	
		어린이	34,000	
5. 헬스시설 이용료		1개월	20,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6. 교육 수강료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이상 3시간 이하)		12,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이상 7시간 이하)		15,000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		20,000	
7. 개인사물함		1개월	4,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생략)</p> <p>1.~2. (생략)</p> <p>3. 여성문화회관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활동 및 <u>교육·취업지원사업, 부대시설의 운영</u></p> <p>4.~5. (생략)</p>	<p>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여성문화회관 : ----- -----<u>교육·취업·여성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사업,</u> -----</p> <p>4.~5.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업) 여성문화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취업지원 사업 : 취업·창업과 관련된 <u>정보제공, 상담, 구인·구직 알선 사업</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2조(사업)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정보제공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u> -----</p> <p>3. <u>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 : 유망 여성창업자를 집중 발굴·육 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등 여성창업지원센터 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u></p> <p>4.~7. (현행과 같음)</p>
<p>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③(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 <u>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 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는 과정 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여성문화회관과 서부여성회관 수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2.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강료와 유아수탁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2.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현행	개정안
<p>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제3호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며, 시설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교육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사용일 7일전 또는 개강식일 전일까지 사용·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교육수강료 전액을 반환 2. 시설사용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3. 개강식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p>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4. 교습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5. 교습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6.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7. 생활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